선교관 운영규정

제정 : 2016 년 7 월 30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해외 선교사의 임시체류및 안식을 위해 마련한 선교관을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선교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1025 Robin Hood Ct Houston, TX 77043

제 3 조 (관리) 선교관의 관리는 선교사역원에서 담당한다.

(전화 : 713-896-9200 , FAX: 713-896-1622 sbch.office@gmail.com)

제 4 조 (선교관의 기본 시설) 선교관의 이용을 위하여 취사 시설과 가구, 이불, 옷장, 침대, 세탁기, 텔레비전 및 컴퓨터, 인터넷 라인, 전화등을 구비한다. 다만, 취사를 위한 식료품및 생필품, 소모품등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

제 5 조 (개관 기간) 선교관은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 계속 개관한다

제 6 조 (이용대상자의 자격) 이용대상자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손님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 2 장 운영 및 이용절차

제 7 조 (관리) 선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역원내에 관리담당자(팀)를 둘 수 있다. 관리담당자는 서울교회 선교사역원에서 위촉하며,

1. 이용자 입·퇴관
2. 선교관의 유지 보수에 관한 건
3.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제안하고 집행한다.

제 8 조 (이용 신청) 본 선교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최소한 30 일전에 별첨 서식 #1 에

의거 "선교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선교단체나 추천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서울교회 선교사역원 으로 접수한다.

- 추천인의 자격은 서울교회 목회자, 목자 또는 서울교회 후원 선교사로 한다.

- 주소 : Seoul Baptist Church of Houston
  7775 Fairbanks N. Houston Rd Houston, TX 77040

- 담당 : 서울교회 선교사역원 상임총무

- 전화 : 713-896-9200 , FAX: 713-896-1622 sbch.office@gmail.com

제 9 조 (이용자 선정)

선교관 이용자는 선교사역원 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본 규정 제 6 조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이용 신청자가 많을시에는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이 서울교회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침례교단 선교사, 타 선교단체 선교사 순으로 이용신청 접수순서를 우선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선교사역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 (이용기간) 선교관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장 3 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입주 시 준수 사항
② 이용자는 입주를 통보받은 후 예약안내 지침에 따라, 선교관의 열쇠와 이용안내서 (첨부 #1 참조)를 인수한다.
③ 이용자는 입주 1 주전 본 선교사역원 연락처로 예약내용(입주시간과 기간등)을 확인한다.
④ 체크인(Check-in)시에는 입주자는 관리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전 사용자가 확인한 선교관 이용후 점검표 (첨부 #3 참조)에 의하여 최종점검 상황이 기록된 비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선교관 이용 전 점검표(첨부#2 참조)에 서명. 날인하고, 점검표 1 부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입주기간 중 준수사항

1) 입주기간 중 선교관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입주기간은 장기 3 개월까지이며 생활에 필요한 일반경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및 관리비등)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되 1 개월에 $200 을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계산하여 납부 한다.

4) 입주기간중 긴급의료 서비스나 공항라이드, 장거리 쇼핑, 여행등의 필요사항의 발생시 교인에게 부탁하기전에 먼저 선교사역원 관리담당자 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③ 퇴거 시 준수사항

1) 이용자와 추천인은 입주당시에 확인하여 작성한 선교관 이용 전 점검표를 근거로 입주 전 상태를 보존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청결하게 정돈을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 (Check-out) 한다.

주요 시설점검내용은 본 선교사역원 관리담당자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선교관 이용 후 점검표(첨부#3 참조)에 따라 실시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컴퓨터, 텔레비젼,가스렌지, 커피 메이커
- 냉장고 (음식을 가능하면 남겨 놓지 않는다)
- 목욕탕 (욕조, 세면대, 변기 등)
- 방과 베란다 청소상태
- 벽 (못이나 낙서 등)
- 사용한 이불, 베게닛, 방석 등의 빨래 (1 개월이상 장기 입주자)
- 열쇠 등.

2) 기간 중 손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소속 단체(추천인)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 토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첨부 #4

선교관 이용 신청 안내

본 선교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기 최소 30 일전에 별첨 서식 (첨부#1)에 의거 "선교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선교단체나 추천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 한다.

접수처 : 서울교회 사무실

- 주소 : Seoul Baptist Church of Houston
  7775 Fairbanks N. Houston Rd Houston, TX 77040

- 담당 : 선교사역원 상임총무 (gimr182@gmail.com)
- 전화 : 713-896-9200 , FAX: 713-896-1622, sbch.office@gmail.com

접수된 신청서는 선교사역원에서 종합 집계하여 심사토록 한다.

이용자 심사 및 선정

이용 신청자가 많을시에는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를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이 서울교회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침례교단 선교사, 타 선교단체 선교사 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서 접수순서를 우선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선교사역원에서 결정한다.
이용자의 선정 결과는 본 선교사역원의 심사결정후 접수일로부터 15 일 안에 본인 또는 후원 선교 단체 또는 추천인에게 통보 한다.

이용기간

선교관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장 3 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 준수사항

*입주시 준수 사항

1) 이용자와 추천인(소속기관)은 입주를 통보받은 후 예약안내 지침에 따라, 선교관의 열쇠와 이용안내서를 인수한다.
2) 이용자는 입주 7 일전 본 선교사역원으로 예약내용(입주시간과 기간) 등을 재확인한다.

-전화 713-896-9200 , FAX: 713-896-1622, sbch.office@gmail.com

3) 체크인시에는 입주자는 관리담당자가 작성하고 이전 사용자가 확인한 선교관 이용후 점검표 (첨부 #3) 에 의거 최종점검 상황이 기록된 비품및 시설물을 재확인, 점검한 후 선교관 이용전 점검표(첨부#2)에 서명하고, 점검표 1 부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입주기간 중 준수사항

1)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는 이용자와 소속 단체의 주관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건물 구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2) 입주기간은 장기 3 개월까지이며 생활에 필요한 일반경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및 관리비등)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되 1 개월에 $200 을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계산하여 납부 한다.

3) 입주기간중 긴급의료 서비스나 공항라이드, 장거리 쇼핑, 여행등의 필요사항의 발생시 교인에게 부탁하기전에 먼저 선교사역원 관리담당자 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 퇴거시 준수사항

1) 이용자와 입주당시에 확인하여 작성한 선교관 이용 전 점검 표를 근거로 입주 전의 상태를 보존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유지한후 관리담당자에게 사전에 시간약속을 하여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한다

주요 시설점검내용은 관리담당자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선교관 이용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컴퓨터, 텔레비젼,가스렌지, 커피 메이커
- 냉장고 (음식을 가능하면 남겨 놓지 않는다)
- 목욕탕 (욕조, 세면대, 변기 등)
- 방과 베란다 청소상태
- 벽 (못이나 낙서 등)
- 사용한 이불, 베게닛, 방석 등의 빨래 (1 개월이상 장기 입주자)
- 열쇠 등.

2) 이용기간중 손상된 물품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소속 단체(추천인)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토록 한다.